

2026년 제1회 공무원근로자(청소원) 채용 공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고 제2026 - 07호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공무원근로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7월 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 채용 예정 인원 및 근무지(총 1명)

채용분야	채용직종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공무직 근로자	청소원	1명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 주요 업무 내용

- 청사 내·외부 환경미화
 - 청사 본관 및 별관 내·외부, 기타 시설 등 청소, 쓰레기 수거 등
-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화 업무

2. 근무 조건

- (신 분) 공무원 근로자(공무원이 아님)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 (급여기준) 2026년 기준 월 고정급 1,535,700원(세전)
 - ※ 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 별도 지급
- (근무시간) 평일 주간 일 5시간 30분 근무(월~금, 07:00 ~ 14:00)
 - ※ 휴게시간 30분 및 중식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 ※ 근무형태 및 근로 시간은 기관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등에 따름

- (근무장소)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911번길 22)
- (기타사항)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신고

3. 채용 자격 요건

가. 공통 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정년) 미만인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신체 건강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는 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 근무 장소에 출·퇴근이 가능한 자(관사 미제공)
-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가 없는 자

규정 상 채용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예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 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나. 가점 및 우대사항(해당자에 한함)

○ (가점)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 상기 요소들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개에 한해 인정(증빙서류 필수)
- ※ 응시자가 응시원서에 미기재 또는 오기재 하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귀책임
-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 장애인의 경우, 보조인의 도움없이 직무 수행이 가능하여야 함

○ (우대요건) 청소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체에 소속되어 청소 관련 근무 경력
-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경력부터 인정하고 인턴 경력 및 자원봉사 활동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직위·직급·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를 포함할 것(근무기간·직급·담당업무 및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경력증명서 제출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제출

4. 채용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소정의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연령 등 공통 응시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합격을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심사 기준에 따라 평정 성적이 높은 순으로 5배수 이하의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최종 후순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서류전형 심사기준

- 근로자로서의 소양(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평가) : **60점(차등 적용)**
-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 시설 미화 업무 근무경력 : **40점(차등 적용)**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경력부터 인정하고 인턴 경력 및 자원봉사 활동경력은 불인정함
 - 경력증명서(근무기간,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2개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일 단위까지 합산하여 인정하되, 일 단위는 15일 이상인 경우만 1월로 인정함
- 저소득층 등 사회형평 가점 : **3점(가산)**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응시자 1명에 대해 개별면접 실시
- 평정요소를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 >

- | | |
|----------------------|------------------|
| (1)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 (5)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상’, ‘중’, ‘하’ 평정 개수로 결정)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채용조건 등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 공고	'26. 7. 3.(금) ~ '26. 7. 10.(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및 각종 사이트 게시
응시원서 접수	'26. 7. 6.(월) 9:00 ~ '26. 7. 9.(금) 18:00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인터넷, 택배 접수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26. 7. 17.(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합격자에 한해 통보
면접시험	'26. 7. 22.(화)	시험시간 등 세부일정 추후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26. 7. 24.(금) 예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합격자에 한해 통보

※ 기관 운영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일정은 개별 통보합니다.

- 접수처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2층 운영지원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전부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911번길 22,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2층 운영지원팀 채용담당자 앞 (우: 61969)

(우편봉투 겉면에 '응시원서(청소원)재중' 표기)

※ 등기우편 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함

- 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 원서접수 서류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응시원서 하단의 응시표 부분에 접수 간인(間印) 날인 후 절취하여 교부(면접시험 당일 지참)

※ 등기우편 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아니하며, 문자로 응시번호 회신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에 한해 합격자 발표 시 개별적으로 연락 예정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 ①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 【붙임 1】
- ② 응시원서 1부 【붙임 2】
- ③ 이력서 1부 【붙임 3】
- ④ 자기소개서 1부 【붙임 4】 (※ 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은 기재하지 말 것)
- ⑤ 주민등록부등본 1부
-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붙임 5】
 -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는 동의여부를 체크하고 서명 후 제출
- ⑦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붙임 6】
- ⑧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붙임 7】
-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 8】
- ⑩ (우대)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확인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또는 직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별도서식이 없는 경우 【붙임 9】 작성 제출), 담당업무, 근무기간 및 주당 근무시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⑪ (가산)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증명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 제출

7. 참고사항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접수자는 접수한 것으로 간주)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공무직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무원 인사·보수 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사전예고 없는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 반환 청구기간 : '26. 7. 27.(월) ~ '26. 8. 26.(화), 주말·공휴일·대체공휴일 제외
- ※ 반환 청구방법 : 【붙임10】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응시원서 접수처로 사전 연락 후 제출
- ※ 구직자의 제출 서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 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임용 및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의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영문 제외)
-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의 중요한 사항이 미비(서명 누락 등)할 경우에는 서류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채용담당자 ☎ 062-605-5202)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

성명	생년월일	응시기관	응시분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직근로자 ■ 청소원

■ 제출 목록

목 록	제출여부
①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붙임 1】 (필수)	☐ 제출 ☐ 미제출
② 응시원서 1부, 【붙임 2】 (필수)	☐ 제출 ☐ 미제출
③ 이력서 1부, 【붙임 3】 (필수)	☐ 제출 ☐ 미제출
④ 자기소개서 1부, 【붙임 4】 (필수)	☐ 제출 ☐ 미제출
⑤ 주민등록부등본 1부 (필수)	☐ 제출 ☐ 미제출
⑥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5】 (필수)	☐ 제출 ☐ 미제출
⑦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붙임 6】 (필수)	☐ 제출 ☐ 미제출
⑧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붙임 7】 (필수)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 8】 (필수)	☐ 제출 ☐ 미제출
⑩ 우대요건 관련 근무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부 (경력(재직) 증명서 제출 시 필수) ※ 근무기관의 경력(재직)증명서에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 【붙임 9】 작성 제출	☐ 제출 ☐ 미제출
⑪ 사회형평 가점 증명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여 맨 앞장에 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경력 및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6.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붙임 2】

응시원서

본인은 2026년도 제1회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관 채용시험에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청소원		(한자)
복수국적 해당여부		생년월일	
주 소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상기 본인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근로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채용관리 등을 위한 상기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 이용·보유기간 : 제공일로부터 5년 (보유기간 경과 시 즉각 폐기) * 거부 시 불이익 조치 : 개인정보이용제공 부동의 시 본 채용에 대한 응시 불가 제공인 (서명 또는 인)			

※응시번호	응 시 표 (공무직근로자)채용시험				
응시분야	청소원	성명		생년월일	
2026년 월 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印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우편접수분의 응시표는 면접 당일 교부하오니 양해바랍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3.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을 기재합니다.
4.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성요령》

- ① 「※응시번호」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② 응시분야 : 해당분야()안에 √ 기재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
-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 ⑤ 개인정보 제공인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이 력 서

1. 인적사항			
성 명		응시분야	청소원
생년월일	년 월 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 해당() ☐ 미해당
주 소	(우)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2. 경력사항			
근무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		
	~		
	~		
	~		
	~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_____(서명)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 경력·자격사항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이용 가능

※ 경력·자격 등 기재 시 반드시 연·월·일을 기재

【붙임 4】

자 기 소 개 서

성명	생년월일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 (청소원)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배우자 직업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 전 파란색으로 쓰여있는 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1.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서명은 자필로 합니다.

※ 내용 중에 **출신학교명과 출생지**는 밝히지 않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고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5】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직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직근로자 채용 및 사후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자기소개서, 범죄경력 등),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사항, 경력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사유 : 공무원직근로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직근로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직근로자 채용 관련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사유 : 공무원직근로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직근로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직근로자 채용 관련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자기소개서, 범죄경력정보 등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사유 : 공무원직근로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 불가로 인해 공무원직근로자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 결격사유 >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성명 : (서명)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붙임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지 원 자

(서명)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시행 2026년도 제1회 공무원직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경력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기타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 발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기타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경력내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기간 : 해당 채용시험 완료 시까지/ 보유기간 : 해당 채용시험 관련 자료 폐기시까지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채용전형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

성명 : (서명)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붙임 9】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소속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①	주당근무시간	비고 ②
	부터	까지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 소 :

전화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자	
소 속	
직 급	
연락처	
성 명	(인)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비 고 : 기타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등 기재)

【붙임 10】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